

경영대학원 학위수여규정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동서대학교 경영대학원(이하 "본 대학원"이라 한다)에서 수여하는 학위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학위수여)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
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

③ 제1항 또는 제 2항에 해당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.

④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.

제 3 조(학위신청 구비서류)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학위논문 신청서 1부

2. 심사용 학위청구 논문 3부

3. 학위청구 논문요지서 1부

4. 지도교수 추천서

② 제출된 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①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4 조(논문제출 및 심사)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라 심사한다.

제 5 조(심의)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인준한다.

4-2-1-2 제2장 경영대학원 학위수여규정

제 6 조(보고)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석사학위 수여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 7 조(시기) 학위수여는 년 2회로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2006학년도 입학생 및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 3호 서식)

석 제 호

학 위 기

성 명 :

년 월 일생

논 문 :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
년 월 일

동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장 ○ ○ ○ (직인)

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동서대학교 총장 ○ ○ ○ (직인)

교육부 학위등록번호 :

(별지 제 4호 서식)

석 제 호

학 위 기

성 명 :

년 월 일 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학점을 이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000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.

년 월 일

국제경영대학원장 ○ ○ ○ (직인)

위의 인정에 의하여 ○○○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동서대학교총장 ○ ○ ○ (직인)

교육부 학위등록번호 :